조문별 제 · 개정이유서

1.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기타 한도성 여신 미사용액 및 부동산프로 젝트파이낸싱 관련 채무보증 이외 지급보증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근거 마련(안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1조제2항)

가. 제 · 개정 이유

○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용판매, 카드매출 이외 기타 한도성 여신 미사용액 및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채무보증 이외 지급 보증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임

나. 제ㆍ개정 내용

○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미사용약정을 추가하고, 신용판매, 카드 매출 이외 미사용약정에 신용환산율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과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채무보증 이외 지급보증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근거를 마련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○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○ 제2금융권의 한도성 여신에 대한 위험관리체계를 강화하여 동 여신 취급에 대한 건전성을 제고하는 한편, 금융업권간 규제차익을 해소함으로써 금융권 전반의 리스크 완화 및 규제 형평성 제고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○ 해당사항 없음